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. 9.

발의자 : 김관영 · 이종걸 · 주승용

황주홍 · 박선숙 · 박주현

최도자 · 박주선 · 이태규

이동섭 · 민병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는 예금자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등의 회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·공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심의·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,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0조제5항).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위원회 의사록(議事錄)을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개의·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
2.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
3. 출석한 위원의 성명
4.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
5. 표결 결과(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)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사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운영) ① ~ ④ (생략) ⑤ 위원회는 <u>위원회 의사록</u> (議事錄)을 작성하고,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	제10조(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</u> ----- ----- -----. 1. 개의·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 시 2.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. 출석한 위원의 성명 4.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5. 표결 결과(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)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u><신 설></u>	
⑥ · ⑦ (생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